

『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2월 1일

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

나. 제안이유

공무원 출장 시 물가상승에 따른 적정 숙박비 지급 현실화 요구와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여비 제도 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, 현장 중심의 업무추진을 유도함으로써 공무원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, 숙박비 현실화에 따른 출장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기준 준용 (안 제4조)
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개정(정부조직개편)에 따라 관련문구 수정 (안 제5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(붙임)
가. 조례 개정에 따른 인상된 숙박비 단가에 맞춰 예산 확보
- 협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검토결과

본 조례안은

-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숙박비 지급에 관한 기준을 당초 4만원에서 지역별 5만 ~ 7만원으로 현실화 하고,
-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련문구를 수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지원기준이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